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4조의5제1항 관련)

1.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2.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$\text{과징금 부과금액} = \text{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} \times \text{영업정지 일수} \times 0.1$
--

3. 제2호의 계산식 중 ‘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’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.
4.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.